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34호 2014. 4. 28.(월)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4-382호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·운영조례  
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4호(2)

## 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4 - 382호

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·운영조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4월 28 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[안]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임대농기계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며, 그 밖에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(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, 안 제13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)

나. 임대농기계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11조)

다. 그 밖에 용어정비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4호(3)

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기술지원과장 ☎ 831-3881 fax 831-605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([www.sacheon.go.kr](http://www.sacheon.go.kr))의 행정정보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 주소 및  
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기술지원과장)

(우편번호 : 664-951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,

전화 : 831- 3881, FAX : 831-6053)